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7 선고 2017가합503031 판결 [보증금청구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17. 5. 26.

판결 선고 2017. 7. 7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. 1.부터 2017. 1. 31.까지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C(이하 '원고 등')는 2015. 2. 17.경 D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, F 각지상에 주택 2동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)을 신축하는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)를 '공사대금: 3억 9,000만 원', '공사기간: 2015. 1. 15.부터 2015. 3.15.까지'로 정하여 수급하였다.

나.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D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고, 그러자 D은 2016. 6.경 위 각 부동산을 소외 G에게 미등기 상태로 매도하였다.

다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G는 원고 등과 사이에 G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억 9,000만 원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고 G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.

라.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G는 2016. 7. 1. 피고와 사이에 특정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증보험계약')을 체결하고, 피고로부터 '보증채권자: 원고'1), '보증금액: 3억 9,000만 원', '보증기간: 2016. 7. 1.부터 2016. 12. 31.까지'로 정한 지급보증서(이하 '이 사건 지급보증서')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.

마. G로부터 위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인도하였으나 G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6. 12. 31.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, 이에 원고는 위 보증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2016. 12. 26.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 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3억9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인2) 2017. 1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. 1. 31.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해진 연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5%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 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G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담보 제공의무 및보증수수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피고의 내부규정에 따라무효 처리되었고, 피고가 2016. 12. 7.경 G에게 위 보증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, 위 지급보증서에 기초한 원고의 보증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지급보증서에 따른 피고의 보증책임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. 따라서 이후 G가 피고에게 위 지급보증서 발급의 대가 등으로 약정한 담보제공 의무나 보증수수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G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여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. 나아가 피고가 G에게 발송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이 G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.3)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## 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.

재판장 판사 윤상도, 판사 김영환, 판사 육영아

1) 원고와 C 및 G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2) 이 사건 보증서 '보증채무의 이행시기'란에 '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 만료일전에 이행 청구 할 수 있기로 한다'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원칙적으로 보증기간 만료일다음날부터 도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.

3)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G는 피고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.

